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 12 . 16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 무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1월 18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3.12.1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황 의 진)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으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 대체에 따른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 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7조)
-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8조)
-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함(안 제16조).
-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
-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부칙 제2조).

다. 개정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1923(2003.10.16)호 및 서울시 세제13430-1218(2003.10.17)호와 관련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사유

- ☐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음
- ☐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조정하고,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관련법률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 추가(안 제7조)
- ☐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영구임대주택 외에 국민임대주택 추가(안 제8조)
-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안 제16조)
- ☐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 삭제(안 제18조)
- ☐ 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안 부칙제2조)

다. 검토의견

- ☐ 본 조례개정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개정안임
- ☐ 감면조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이제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 추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이며, 우리 구조례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기 감면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 외의 지정된 문화재에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람
- ☐ 안 제8조에서 감면대상 임대주택 중에 영구임대주택 외에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한 것과 안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 제18조에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 삭제는 임대주택건설 촉진 등 저소득층의 수혜범위는 확대하면서 그 외에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서 정부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개정안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 확대는 우리 구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우리 구는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다보니가 유동인구가 많은 등 예산수요는 많으나 타 자치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포함하여 비과세대상면적이 전체면적의 66.7%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70%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보전(補填)대책 없이 또다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내용도 산정항목에 추가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현행조례 제7조제3조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도에 관계없이 구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종로구의 경우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이 295개소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상업용부동산을 추가한다 하여도 추가로 감면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조 기 태 위원 의 수정(안) 동의

6. 수 정 안 의 요 지

○ 수정이유

- 안 제7조제1항제1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는 문화재인 경우 용도구분 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 아울러 우리구 비과세 대상 면적이 전체면적의 66.7%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보전대책 없이 또다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함

○ 수정안 본문

-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기존 조례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개정안대로 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따로붙임 참조

○ 수정안 대비표

원안	개정안	수정안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①-----	①-----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u>주거용 부동산</u>	1. ----- ----- <u>부동산</u>	1. ----- ----- <u>주거용부동산</u>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주거용 건축물</u> 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u>주거용 부동산</u>	2. ----- <u>건축물</u> ----- ----- ----- <u>부동산</u>	2. ----- <u>건축물</u> ----- ----- ----- <u>주거용 부동산</u>
3. (생략)	3.(현행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로 “50%”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본문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